

# 서울풍물시장 관리·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95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8월 7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## 1. 제안이유

- 가. '서울풍물시장'은 과거 동대문운동장 주변에서 노점형태로 영업하던 상인들을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에 따라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고자 '08년 동대문 신설동 서울교육청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800여개 점포를 이전시켜 운영하고 있는 시장임
- 나. 그동안 '서울풍물시장'은 한국의 전통적인 골동품과 추억이 담긴 물품 판매, 다양한 볼거리 제공 등으로 시민들과 외국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음
- 다. 그러나 노점상 형태의 상인들로 전문역량이 부족하여 풍물시장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 발굴, 점포의 체계적 관리, 상인 특화교육, 홍보 등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풍물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- 라. 따라서 우리 전통문화의 보존·계승과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안정 도모를 위해 '서울풍물시장' 사업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서울풍물시장 관리·운영
- 나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및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- 「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(경영 및 창업지원) 및 제11조(사무의 위탁)

○ 추진경위

- '07.08.21. : 동대문풍물벼룩시장 이전 협의
- '07.10.11. : 청계천풍물시장 위탁관리업체 선정
- '07.10. ~ '08.03 : 서울풍물시장 신축 건축공사
- '08.04.26. : 서울풍물시장 이전 및 개장
- 위탁현황

위탁기간	수탁업체	협약체결일	비고
'07.10.11.~'10.10.10.	(주)에스마름	'07.10.11.	
'10.10.11.~'11.11.23.	(주)코스모리치	'10.09.17.	3년이나, 임금체불 등 사유로 협약해지
'11.11.24.~'11.12.31.	(주)대호지앤씨	'11.11.23.	협약해지에 따른 한시적 위탁
'12.01.01.~'13.10.10.	(주)백상기업	'11.12.26.	당초 협약 기간중 잔여기간
'13.10.11.~'16.12.31.	(주)백상기업	'13.10.10.	
'17. 1. 1.~'19.12.31.	(주)백상기업	'16.12.23.	

○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서울풍물시장은 서울시와 상인들 간 800여개 이상의 점포임대차 계약을 '16.5.26. ~ '21.5.25.(5년간) 체결 중으로 다수의 점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노하우 및 다수의 관리직원이 필요하며,

- 또한 품물시장만의 특색 있는 품목선정, 다양한 콘텐츠 도입, 행사·축제 유치, 온·오프라인 홍보 활동 등 품물시장 운영 취지에 맞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케팅 등 경험이 풍부한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이라고 판단됨.

#### 다. 위탁사무내용

- 위탁대상 사무 : 서울품물시장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전반
  - 시장활성화 추진 종합대책 수립(점포재배치, 품목개선, 마케팅 홍보, 관광객유치, 상인특화교육 등)
  - 시설물(부대시설, 비품·장비 포함) 유지 및 관리
  - 점포관리, 점포 임대·차 계약, 관리비용 징수, 공유재산 사용료 납입 고지서 교부 및 징수독려 등
  - 유통 및 상거래 질서의 확립 업무, 상인 입주 및 그 관련 사항
  -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·불만의 처리
  - 시장 주변의 환경 정비 및 관리

#### 라. 위탁시설 개요

- 위 치 : 동대문구 천호대로 4길 21(신설동, 서울품물시장)
- 규 모 : 토지 6,535 $m^2$ , 연면적 7,578.68 $m^2$ 
  - 점포현황 총 836개소, 지상2층, 주차면수 79면, 상인교육장 231 $m^2$
  - 기타 시설 264 $m^2$ (전통문화체험관, 경비실, 야외무대, 재활용수집장)

마. 민간위탁 예정기간 : 3년('20.1월 ~ '22.12월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(민간위탁금) : 3,151백만원('20년)

- 관리위탁 인건비, 기본경비 : 1,284,757천원
- 시장활성화(홍보, 교육, 공연): 438,000천원
- 시설물 주요공사 : 850,000천원
- 시설물 유지관리 : 436,400천원
- 상인회지원(행사, 교육장 운영) : 48,000천원
- 사업부대경비 : 94,000천원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[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]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9.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[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]

제8조(경영 및 창업지원)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4. 홍보,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,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
7.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

제11조(사무의 위탁) ① 제8조 및 제9조에 대한 사무는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2020년 예산안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소상공인지원팀 박동호(☎2133-5552)